

학점인정 관련 조항(선수학점, 인정학점, 편입학학점인정)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2022.09.01

제25조(선수학점)

① 각 대학원은 제23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1. 일반대학원 :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(전공)과 상이한 학과(전공)에 입학 한 자

2. 전문대학원 :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 한 자

②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7조(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

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·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,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,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
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022.09.01.

제9조(선수학점 이수)

① 일반대학원에 비동일계로 입학한 경우 학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⑤ 선수학점은 수강신청학점, 졸업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.

제11조(입학전 이수학점 인정)

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(내규 제37조)

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 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
일반대학원 내규 2022.09.01.(편입학)

제37조(학점인정 등) 편입한 자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,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